



제000회 국회(임시회)
제0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규모증가율 등에 물가안정목표
및 잠재성장률 반영〉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8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규모증가율 등에 물가안정목표 및 잠재성장률 반영(안 제7조제12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건영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4.

다.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규모증가율 등에 물가안정목표 및 잠재성장률 반영(안 제7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규모증가율 및 재정지출 증가율을 정할 때 한국은행법에 따른 물가안정목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잠재성장률을 반영하여야 함.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 방향 ·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등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재정규모증가율과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시 물가안정목표 및 잠재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임.

「국가재정법」 제7조1)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재정지출규모증가율 및 재량지출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 등이 포함되며,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
- 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 ④ ~ ⑪ (생략)

및 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조세정책운용계획, 장기 재정전망 결과 등의 서류가 첨부됨.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또한, 현행법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²⁾에 해당하여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를 고려하여 수립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 규모와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또한,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시 반영하여야 할 거시경제 지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 거시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이미 고려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화를 통해 구속할 경우 오히려 탄력적인 경기대응 등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국가재정이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³⁾하고 있고, 잠재성장률⁴⁾이 인구감소 등에 따라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구조적으로 긴축적 예산편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3) 물가안정목표: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년 2.5%, '22년 5.1%, '23년 3.6%, '24년 2.3%, '25년 2.1%

(자료: 재정경제부)

4) 잠재성장률 전망: '10년대 3%대 → '25년 1%후반 → '30년대 1%내외 → '40년대 0%

(자료: 재정경제부)

둘째, 개정안은 잠재성장률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정기관 및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는 잠재성장률 산정방식을 법령에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KDI, 한국은행, OECD 등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상이한 바⁵⁾ 대통령령에 산정방식을 특정하기 보다는 다수 기관의 전망을 참고하여 재정운영의 판단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5) 기관별 잠재성장률 전망치: (한은, '25~'29) 1.8%, (OECD, '25~'27) 1.7% (KDI, '25~'30) 1.5%
OECD '24년 잠재성장률 전망치 변동: ('23.12) 2.0%→('24.6) 2.6%→('24.12) 2.3%→('25.6) 2.2%
(자료: 재정경제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⑪ (생략) <u><신설></u>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재정규모증가율 및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정할 때 「한국은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잠재성장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의처

02)6788-5151